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형찬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으로 인하여 공항소음 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인 서울시 서부권역(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및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을 규정하며, 주민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과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